

1. 개정이유

'19.12.30.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('22.1.1.)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(안 제16조)

- 1)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법정 의무설정률(총급여액의 12분의 1)로 일괄 설정하였으나,
- 2)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,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
- 3)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

나. 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(안 제21조)

- 1)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어,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
- 2)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'노무량'을 활용하도록 하고, '기준노무량'이 산정된 경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

다. 기타 조문정비(안 제2조, 제28조)

- 1)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‘관급재료’ 대신,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‘관급재료비’의 정의로 반영
- 2)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.

라. 종전 부칙의 개정

- 1)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단서 중 “관급재료비”를 “제13호의 관급재료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“관급재료”란”을 ““관급재료비”란”으로, “지급하는 재료를”을 “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퇴직급여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)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을 곱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다.

제28조제2항 중 “정산원가 계산”을 “개산계약(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본문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1월 1일”로 하고, 같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산노임단가에 관한 특례)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제21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2024년까지는 방산노임단가 및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업체별 노임단가를 각각 100분의 50씩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한다.

제3조(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정산원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“제조원가”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·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. 다만, <u>관급재료비</u> (官給材料費)는 제외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3호의 관급재료비</u> -----.
4. ~ 12. (생략)	4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“ <u>관급재료</u> ”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<u>지급하는 재료를</u> 말한다.	13. “ <u>관급재료비</u> ”란 ----- ----- -- <u>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</u> -----.
14. ~ 20. (생략)	14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노무비)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,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.	제16조(노무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퇴직급여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에 1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	4. 퇴직급여(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

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제외한다)

② ~ ④ (생략)

제21조(직접노무비)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기준노무량을 곱하여 계산한다.

② (생략)

제28조(정산원가의 계산) ① (생략)

② 정산원가 계산에서 직접재료비·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, 간접재료비·간접노무비·간접경비·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
③ ~ ⑤ (생략)

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직접노무비)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을 곱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정산원가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개산계약(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제외한다)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
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
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20조, 제28조제2항(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(정산원가 계산 기준 시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, 제39조의4 및 제3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
량에 관한 특례) 제16조제1항제
4호, 제21조 및 제28조제2항부
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
라 노무비를 산정할 때 2024년
까지는 해당 연도별로 다음 각
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
라 노무비를 산출한다.

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
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부
칙

제1조(시행일) ----- 2023년 1
월 1일----- . -----

<삭 제>